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1. 26(화) 10:00

제25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14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4. 11. 13.
- 라. 회부일자 : 2024. 11. 13.

2.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2023. 9. 26.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서울시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확대에 따른 관련 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아동 급식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및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아동 급식지원 대상 기준을 소득인정액이 서울특별시 결식 아동 급식 지원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의 아동으로 변경(안 제2조제2호)
-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제3호)
- 다.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 이유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서울시 결식 아동 급식 대상 기준에 맞게 조문 내용을 변경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나. 주요 내용

1) 아동 급식지원 대상 기준을 소득인정액이 서울특별시 결식 아동 급식 지원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의 아동으로 변경(안 제2조제2호)

- 대상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이하” 에서 “서울특별시 결식 아동 급식지원 대상 기준” 으로 변경함
- 서울시 결식아동 대상 기준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단가 : 1식 기준 9,000원('24년 2. 1.일자로 8천원→9천원 인상)
- 선정기준 ※ 2024년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매뉴얼 참조
 - 기초수급가정 및 한부모가정 아동, 보호자 부재 등 급식지원대상(7개항목)에 해당하면서 가정 환경상 가정 내에서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①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② 한부모가정 ③ 긴급복지지원대상가정
- ④ 보호자부재 ⑤ 보호자의 양육능력 미약 ⑥ 중위소득 60%이하 가정
- ⑦ 담임교사, 통·반장 등 추천

*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제3호)

- 인용조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로 변경

3)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을 “소득인정액이 서울특별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으로 변경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결식 대상 아동을 서울시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서울시 급식 정책과의 행정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명시하였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아동급식 대상자 현황

- 지원유형별 대상자 현황

(2024. 10. 31. 기준/단위 : 명)

구 분	계	단체급식소	아동급식카드 (꿈나무카드)	부식지원	집밥프로젝트
2024년	1,466	820	622	24	122
2023년	1,480	822	617	41	169
2022년	1,556	812	646	98	234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18호, 2024. 2. 6., 일부개정]

-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4. 8. 7.] [대통령령 제34684호, 2024. 7. 9., 일부개정]

-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에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 6. 21.>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6. 21., 2023. 9. 26.>
- ③ 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6. 21.>
- ⑤ 제4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6.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약칭: 한부모가족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0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1. 4. 12.,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4. 1. 21.]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1. 4. 12., 2014. 1. 21., 2018. 1. 16., 2023. 4.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4. 1. 21.,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4. 1. 21.]